

#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7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남창진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기덕,  
김길영, 김영철, 김원태,  
김재진, 김태수, 김형재,  
남궁역, 민병주, 박춘선,  
서상열, 유만희, 윤종복,  
이상욱, 이성배, 이원형,  
이종환, 임춘대, 홍국표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관광진흥법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2024. 12. 31.)하여 기존 '장애인 · 고령자 관광활동의 지원'에 '다자녀가구'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광약자에 대한 용어 정의에 다자녀를 추가함.(안 제2조제2호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임신”을 “임신, 다자녀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장애인 관광활동지원)”을 “(장애인 · 고령자 · 다자녀가구 관광활동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장애인”을 “장애인 · 고령자”로, “활동지원에 필요한”을 “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애인의 여행”을 “장애인 · 고령자의 여행”으로, “장애인의 관광”을 “장애인 · 고령자의 관광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관광약자”란 관광취약계층, 장애, 노령, <u>임신</u>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<u>임신, 다자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 <u>장애인 관광활동지원</u> ) ① 시장은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에 따라 <u>장애인</u> 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	제5조( <u>장애인·고령자·다자녀가구 관광활동지원</u> ) ① ----- ----- <u>장애인·고령자</u> ----- ----- <u>활</u> <u>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</u> -- -----.
② 시장은 <u>장애인</u> 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<u>장애인</u> 의 관광 지원 사업과 <u>장애인</u>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② ----- <u>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</u> ----- -- <u>장애인·고령자의 관광</u> --- <u>장애인·고령자 관광</u>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③ 시장은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6조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

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  
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  
구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관광진흥법」 개정 내용<sup>1)</sup>을 조례에 반영<sup>2)</sup>하여 법령과 조례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<sup>3)</sup>은 적거나 없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**

- 1) [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] 최근 관광약자에 다자녀가구 등이 추가되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정책강구 의무가 부여됨

#### 「관광진흥법」

제47조의3(장애인·고령자·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·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21., 2024.2.27.>  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·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·고령자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·고령자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3.21.>  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5.1.31.>

- 2) [법정의무사항 조례상 반영] 상위 또는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은 통상 법률과 조례간 정합성 확보 차원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본 안의 경우에도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적 시책 강구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은 법정의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취지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3) [사업규모 유지가능성 고려] 서울시에서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고령자를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(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) 지원대상 총정원(Q)과 사업 총규모는 유지한 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할 경우 해당 규정이 서울시 재정지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

※ 서울시 관광체육국 2025 <관광취약계층 대상 여행활동지원> : 754,833천원

◦ 사업기간 : 2025. 8월 ~ 2025. 12월

◦ 지원대상 :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(관광취약계층의 범위)에 의한 서울거주 관광취약계층

◦ 추진방법 : 서울시 소재 여행업계 대상 여행상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프로그램 지원